

---

# 부록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95
2. 2022년 중 주요 일지	101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103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104
5. 통계	105
6. 용어 해설	110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 2022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2022.10.27)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 ( 개정 필요성 )

-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조치를 3개월간 유예하고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

\* 최근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증거금 추가 납입, 기업들의 대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은행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 주요 개정내용 )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예정된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

	현행	'23.2월	'23.5월	'24.2월	'24.5월	'25.2월	'25.5월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70%	80%	80%	9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추가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

- 일부 적격담보의 유효기간 재설정

- 2020.4.9일 개정 규정 부칙(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일부 담보증권\*에 대해 유효기간을 재설정

\*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금번과 동일한 범위의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동 조치는 2021.3.31일자로 종료된 바 있음

#### ( 시행일 )

- 2022년 11월 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생략)</b>                      1.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가. 예금보험공사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한국가스공사                      라. 한국도로공사                      마. 한국수자원공사                      바. 한국전력공사                      사. 한국철도공사                      아. 한국철도시설공단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8.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9.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1월 31일까지는 &lt;별표&gt;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                      1. ~ 2. (생략)                      ③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1항제1호·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                      ④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lt;별표&gt;</p> <p style="text-align: center;"><b>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td> <td>50%</td> </tr>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70%	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50%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70%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80%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90%	<p><b>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b>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국가철도공단                      나. 예금보험공사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라. 한국가스공사                      마. 한국도로공사                      바. 한국수자원공사                      사. 한국전력공사                      아. 한국철도공사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8. ~ 9.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lt;별표&gt;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2022. 10. 27.&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유효기간)</b>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lt;별표&gt;</p> <p style="text-align: center;"><b>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p>- 적격담보증권을 한시적으로 확대 인정</p> <p>-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반영</p> <p>- &lt;별표&gt; 적용기간 변경</p> <p>- 신규 적격담보증권을 제2그룹으로 구분해 관리</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p>-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재설정</p> <p>-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p>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70%																					
2020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50%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70%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80%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90%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 2023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2023.1.13)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 ( 개정 필요성 )

-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일정을 재연기하고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할 필요

#### ( 주요 개정내용 )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3개월 연기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인 비율 인상 일정도 3개월씩 순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

	현행	'23.5월	'23.8월	'24.5월	'24.8월	'25.5월	'25.8월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70%	80%	80%	9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한 조치를 3개월간 연장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

#### ( 시행일 )

- 2023년 1월 31일

-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관련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lt;별표&gt;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                      1. ~ 2. (생략)                      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2022. 10. 27.&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lt;별표&gt;                      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25년 7월 31일까지는 &lt;별표&gt;의 비율에 따른 담보증권 금액을 제공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2022. 10. 27.&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23. 1. 13.&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2023. 1. 13.&gt;</p> <p>이 규정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lt;별표&gt;                      기간별 담보증권 제공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적용 기간</th> <th style="width: 40%;">담보증권 제공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td> <td>70%</td> </tr> <tr> <td>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td> <td>80%</td> </tr> <tr> <td>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td> <td>90%</td> </tr> </tbody> </table>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0%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80%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90%	<p>- &lt;별표&gt; 적용기간 변경</p> <p>-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재설정</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p>-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p>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0%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90%																	
적용 기간	담보증권 제공비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0%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80%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90%																	

## 2023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2023.4.11)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 ( 개정 필요성 )

-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할 필요

#### ( 주요 개정내용 )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한 조치를 3개월간 연장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

#### ( 시행일 )

- 2023년 4월 30일
  -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관련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lt;2022. 10. 27.&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23. 1. 13.&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lt;2022. 10. 27.&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23. 1. 13.&gt;, &lt;개정 2023. 4. 11.&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lt;2023. 4. 11.&gt;</p> <p>이 규정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일부 적격담보 증권의 유효기간 연장</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 2. 2022년 중 주요 일지

시기	조치 내용
2022. 1. 25.	<p>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1단계 모의실험 연구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C 1단계 모의실험(2021.8~12월)에서는 가상 실험환경에서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기본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li> <li>• 2단계 모의실험이 종료되는 2022년 6월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CBDC 활용성 실험 및 기술 검증을 확대 수행할 계획</li> </ul>
	<p>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C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글로벌 논의 동향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li> </ul>
1. 27.	<p>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 후 전국 확대</li> </ul>
2. 1.	<p>한국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0년 4월 실시한 한시적 담보제공비율 인하 조치(70% → 50%)를 종료</li> <li>• 2025년 2월까지 담보제공비율을 순차적으로 100%까지 인상할 계획</li> </ul>
4. 27.	<p>한국은행,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중 지급결제제도 감시·정책대응,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와 향후 정책방향을 기술</li> </ul>
5. 18.	<p>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li> </ul>
5. 30.	<p>한국예탁결제원,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 지원 시스템 오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예탁결제원 전산 네트워크를 이용해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를 표준화·전산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간 처리함으로써 사모펀드 후선업무 간소화</li> </ul>
6. 13.	<p>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포지션에 대한 축약 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전체 참가자의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 거래규모를 축소하는 서비스 시행</li> </ul>
7. 6.	<p>금융안정위원회(FSB),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성과 평가지표(안)」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목표의 3개부문(은행간 지급, 개인·기업간 지급, 개도국 소액송금)에 대해 4개 개선항목별(비용, 속도, 접근성, 투명성)로 주요 평가지표 및 데이터 수집방안을 명시</li> </ul>
7. 11.	<p>한국은행,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구축에 앞서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RTGS 결제 프로세스와 시스템 설계 방안을 마련</li> </ul>
8. 29.	<p>한국은행,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2022.3.17일 발표)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li> </ul>
9. 7.	<p>한국은행, 「2021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IT운영 현황,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현황 등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자료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 등을 수록</li> </ul>

시기	조치 내용
9. 26.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li> </ul>
9. 29.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 발표</li> </ul>
10. 27.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포괄범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은행채, 공공기관 발행채권 포함)하는 한편 예정되었던 담보증권 제공비용 인상 일정을 3개월간 순차적으로 유예(11.1일 시행)</li> </ul>
10. 31.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li> </ul>
11. 7.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C 2단계 모의실험(2021.12~2022.6월)에서는 1단계에서 구현한 모의실험 환경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정책지원 업무 등 확장기능을 실험해 정상 작동함을 확인</li> <li>• 향후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제적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심화해 나갈 계획</li> </ul>
11. 8.	한국은행, 2022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li> </ul>
11. 30.	우정사업본부, 4대 시중은행 금융 업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 망을 시중은행에 개방함으로써 창구와 ATM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제공</li> </ul>
12. 5.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감독·감시 등 주요 이슈와 각국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규제 입법방향을 도출</li> </ul>
12. 16.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채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융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를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12. 27.	한국은행,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MI-IOSCO가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원칙」과 「PFMI 정보공개 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한은금융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li> </ul>
2023. 1. 13.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2022.11.1일 시행)의 종료기한을 종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2023.1.31일 시행)</li> </ul>
2. 3.	한국은행, CBDC 관련 조직 확대 등 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C 실증 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폐 전담팀을 4개 팀으로 확대 개편(기존 1개 팀, 2개 반)</li> <li>• 지급결제 운영과 감시 기능의 분리를 위해 결제운영팀과 결제업무팀을 금융업무실로 이관</li> </ul>
4. 11.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일부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한시적 확대조치(2022.11.1일 시행)의 종료기한을 종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2023.4.30일 시행)</li> </ul>

###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 총 130 기관 (은행: 54, 비은행: 76)<sup>1)</sup>

분류		가입기관명	
은행 (54)	국내은행 (20)	시중	우리, SC, 국민, 신한, 한국씨티, 하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방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외은지점 (34)	뉴욕멜론, 대화, 도이치, 엠유에프지, 멜라트,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소시에테제네랄, 스테이트스트리트, DBS, 야마구찌, 크레디아그리콜CIB, 유바프, 중국, 중국공상, 파키스탄국립, 호주뉴질랜드, BNP파리바, BOA, 크레디트스위스, HSBC, ING, JP모간체이스, OCBC, 중국건설, 교통, 모간스탠리, 바덴뷔르템베르크, 중국농업, 교통(청산),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인도네시아느가라, 중국광대, 노던트러스트	
비은행 (76)	금융 투자회사 (44)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유화증권, 하이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흥국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메리츠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디에스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BNK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다이와증권코리아, 한국포스증권, 케이알투자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IDB채권중개	
	보험회사 (16)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교보생명, KB손해,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DB손해, 농협생명, 메리츠화재해상, 흥국화재, KB생명, 하나생명, 롯데손해, DB생명, 삼성화재	
	종금사(1)	우리종합금융	
	기타 (15)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금중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CLS, 서울외국환중개, 농협중앙회, 비지스캐피탈마켓, GFI코리아외국환중개, 트레이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2006.8.21. 09:30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타행환공동망	타행환업무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9:30
	CD/ATM공동망	CD/ATM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업무규약,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 전자어음업무규약, 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교환규약 <sup>1)</sup> , 기업구매자어음 정보교환규약 및 각 규약의 시행세칙, 재해·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규약	2014.1.10. 00:00
	지로시스템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CLS 은행	CLS시스템	CLS Bank International Rules, Settlement Member Agreement	2006.8.21. 09:30

주: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 달러화 표시에 한함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 현재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가 해당

## 5. 통계

### 가.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건수

(일평균, 천 건,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한은금융망	19.9	20.8	22.2	23.3	4.9
소액결제시스템	25,505	27,878	32,614	36,230	11.1
어음교환시스템	252	200	175	154	-11.7
지로시스템	4,301	4,193	4,120	4,104	-0.4
금융공동망	20,951	23,485	28,319	31,971	12.9
(전자금융공동망)	14,236	16,114	19,041	21,333	12.0
(타행환공동망)	295	273	254	238	-6.4
(CD공동망)	1,548	1,226	1,064	967	-9.1
(CMS공동망)	3,839	3,798	3,913	4,077	4.2
(지방은행공동망)	0.5	0.4	0.3	0.3	-12.7
(전자상거래공동망)	81	108	138	121	-12.3
(직불카드공동망)	0.1	0.1	0.0	0.0	-20.5
(오픈뱅킹공동망) <sup>1)</sup>	950	1,966	3,908	5,234	33.9

주: 1) 2019년 12월부터 데이터 입수, 입·출금 합계 기준

### 나.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금액

(일평균,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한은금융망	369,920	423,552	488,491	524,331	7.3
소액결제시스템	69,608	80,201	94,338	99,279	5.2
어음교환시스템	7,661	7,254	7,039	7,340	4.3
지로시스템	1,030	1,042	1,098	1,174	6.9
금융공동망	60,917	71,906	86,201	90,765	5.3
(전자금융공동망)	54,823	65,261	78,757	83,473	6.0
(타행환공동망)	4,679	5,191	5,504	4,885	-11.3
(CD공동망)	818	722	655	584	-10.9
(CMS공동망)	414	401	409	439	7.2
(지방은행공동망)	8.3	5.7	4.8	4.5	-6.9
(전자상거래공동망)	13	15	18	17	-5.2
(직불카드공동망)	0.0	0.0	0.0	0.0	-21.1
(오픈뱅킹공동망) <sup>1)</sup>	162	310	853	1,364	59.9

주: 1) 2019년 12월부터 데이터 입수, 입·출금 합계 기준

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참가기관 간	18,811	19,647	21,027	22,047	4.8
	콜자금	468	387	342	335	-2.1
	(콜거래시스템)	467	387	342	334	-2.2
	(일반자금이체시스템)	0	0	0	0	165.0
	증권자금	13,967	14,828	15,989	16,757	4.8
	(DVP시스템)	12,804	13,688	14,828	15,616	5.3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163	1,140	1,161	1,141	-1.7
	외환자금	594	549	514	528	2.6
	(CLS시스템)	40	39	39	40	2.0
	(일반자금이체시스템)	554	510	475	488	2.7
	고객자금	2,668	2,769	2,978	3,205	7.6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887	916	957	994	3.8
	(일반자금이체시스템)	787	736	731	734	0.4
	(연계결제시스템)	993	1,117	1,290	1,478	14.6
	차액자금	241	239	237	240	1.3
	기타	874	875	967	983	1.6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128	1,159	1,179	1,244	5.4
국고금수급 <sup>1)</sup>	1,058	1,088	1,101	1,156	5.0	
한국은행대출	23	23	26	34	32.1	
국공채거래 <sup>2)</sup>	47	47	52	54	2.4	
원화자금 합계	19,939	20,806	22,206	23,290	4.9	
외화자금 합계 <sup>3)</sup>	7.2	7.3	7.2	8.2	14.4	
금액	참가기관 간	353,856	405,009	465,366	497,264	6.9
	콜자금	21,070	21,579	20,603	23,058	11.9
	(콜거래시스템)	21,062	21,575	20,596	23,047	11.9
	(일반자금이체시스템)	9	3	6	11	77.9
	증권자금	214,591	236,056	257,375	269,895	4.9
	(DVP시스템)	174,533	190,348	205,992	222,890	8.2
	(일반자금이체시스템)	40,058	45,708	51,382	47,005	-8.5
	외환자금	14,561	14,831	14,464	16,822	16.3
	(CLS시스템)	2,935	3,326	3,131	3,645	16.4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1,625	11,505	11,333	13,177	16.3
	고객자금	50,228	63,162	73,602	79,462	8.0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14,177	14,894	17,746	21,046	18.6
	(일반자금이체시스템)	26,173	35,841	40,701	41,505	2.0
	(연계결제시스템)	9,879	12,427	15,155	16,912	11.6
	차액자금	18,112	22,451	25,889	27,466	6.1
	기타	35,295	46,930	73,435	80,560	9.7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6,064	18,543	23,124	27,067	17.0
국고금수급 <sup>1)</sup>	7,797	7,808	9,493	10,398	9.5	
한국은행대출	1,377	2,252	3,463	3,812	10.1	
국공채거래 <sup>2)</sup>	6,890	8,484	10,168	12,857	26.4	
원화자금 합계	369,920	423,552	488,491	524,331	7.3	
외화자금 합계(백만 달러) <sup>3)</sup>	676	1,002	1,128	1,637	45.1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제수납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환매포함)

3) 예치 및 인출 포함

라.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어음·수표	381	308	271	235	-13.2
	교환제시	252	200	175	154	-11.7
	발행창구제시	121	100	89	75	-16.5
	전자어음	7.7	7.0	6.5	6.0	-7.8
	계좌이체 <sup>1)</sup>	24,560	27,156	31,967	35,604	11.4
	지급카드	65,053	63,273	66,900	73,453	9.8
	신용카드	40,685	39,211	42,044	46,400	10.4
	(물품 및 용역 구매)	40,462	39,034	41,882	46,240	10.4
	(현금서비스)	223	177	162	161	-0.9
	체크카드	24,141	23,187	24,163	26,271	8.7
선불카드	86	734	504	565	12.1	
직불카드	0.1	0.1	0.0	0.0	-20.5	
현금IC카드 <sup>2)</sup>	141.3	141.8	189.5	216.9	14.4	
전자화폐	1.0	0.5	0.1	0.1	-28.6	
금액	어음·수표	17,267	18,240	18,900	16,662	-11.8
	교환제시	7,661	7,254	7,039	7,340	4.3
	발행창구제시	8,344	8,703	7,975	7,189	-9.9
	전자어음	1,262	2,283	3,886	2,133	-45.1
	계좌이체 <sup>1)</sup>	61,779	72,801	87,152	91,787	5.3
	지급카드	2,669	2,669	2,909	3,266	12.3
	신용카드	2,131	2,109	2,312	2,611	12.9
	(물품 및 용역 구매)	1,967	1,960	2,160	2,453	13.5
	(현금서비스)	165	149	152	158	4.1
	체크카드	532	540	581	637	9.6
선불카드	2.5	17.0	12.6	14.5	15.1	
직불카드	0.0	0.0	0.0	0.0	-21.1	
현금IC카드 <sup>2)</sup>	2.4	2.3	2.8	3.3	14.6	
전자화폐	0.0	0.0	0.0	0.0	-16.7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직불형카드의 일종으로 2012년 11월부터 서비스 개시

마. 주요 전자금융 이용현황

(일평균, 천 명, 천 건, 천 매,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인터넷 뱅킹 <sup>1)</sup>	등록고객수 <sup>2)3)</sup>	163,914	174,392	190,859	207,036	8.5	
	(개 인)	153,904	163,576	178,942	194,256	8.6	
	(법 인)	10,010	10,816	11,917	12,780	7.2	
	이용건수	12,721	14,680	17,321	19,712	13.8	
	이용금액	48,814	58,997	70,554	76,339	8.2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 <sup>2)3)</sup>	121,976	135,080	153,369	169,219	10.3	
	이용건수	9,507	11,684	14,363	16,841	17.3	
	이용금액	6,394	9,415	12,858	14,176	10.3	
전자 화폐	발급매수 <sup>3)</sup>	17,495	16,122	16,251	16,263	0.0	
	이용금액	0.00	0.00	0.00	0.00	0.0	
전자 어음	발행 규모	건수	6.4	5.8	5.4	5.2	-3.6
		금액	2,017	3,591	5,754	4,147	-27.9
	할인 규모	건수	1.3	1.0	0.8	0.8	-6.7
		금액	62.5	49.0	46.0	48.4	5.3

주: 1)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며,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료 수정

2) 19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3) 기말 기준



바.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간편결제 <sup>1)2)</sup>	이용건수	10,073	14,539	19,812	23,423	18.2
	전자금융업자	4,244	7,475	11,237	12,911	14.9
	(신용카드 <sup>3)</sup> )	2,197	3,789	5,626	6,146	9.2
	(선 불)	1,770	3,250	4,964	6,129	23.5
	(계 좌)	278	435	648	636	-1.8
	휴대폰제조사	3,858	4,476	5,542	7,173	29.4
	금융기관	1,971	2,588	3,032	3,339	10.1
	이용금액	317	449	607	733	20.8
	전자금융업자	119.9	205.2	301.4	351.2	16.5
	(신용카드 <sup>3)</sup> )	85.5	135.3	194.0	213.8	10.2
	(선 불)	24.5	56.8	88.5	118.6	34.0
	(계 좌)	9.9	13.1	18.9	18.8	-0.4
	휴대폰제조사	89.9	107.0	137.6	185.3	34.7
	금융기관	107.3	136.9	167.6	196.2	17.1
간편송금	이용건수	2,485	3,258	4,333	5,196	19.9
	전자금융업자	2,343	3,062	3,998	4,811	20.3
	금융기관	142.2	196.3	334.4	385.6	15.1
	이용금액	235	357	505	626	24.1
	전자금융업자	218.4	329.3	472.3	610.9	29.3
	금융기관	16.2	27.3	32.2	15.0	-53.4

주: 1) 간편결제 이용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관 및 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편제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시계열을 모두 소급해 개편)

2)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료 수정

3) 체크카드 포함

## 6. 용어 해설

용어	해설
간편결제 easy payment service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간편송금 easy transfer service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불금계정에 미리 충전한 자금을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전화번호(메시지 발송) 및 선불금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
감시 oversight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거래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payment system	통상 거액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지급을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settlement risk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함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 청산,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금융시장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거래당사자(또는 중앙청산소),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함
담보 collateral	담보 취득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 제공자가 사용하는 자산 또는 제3자의 채무이행 보증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분산 및 동조화(distributed and synchronised)되어 있는 원장을 검증하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제반 기술 및 절차
소액결제시스템 retail payment system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순이체한도 net debit cap	차액결제거래 시 신용·유동성 리스크 규모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정한 미결제 순이체액(타 은행 앞 지급요청 금액 - 타 은행으로부터 고객 앞 지급요청을 받은 금액)의 상한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해 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자산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단일 또는 다수의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도 지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
신속자금이체 fast payment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
신용리스크 credit risk	거래 당사자 중 하나가 지급기일 또는 그 이후에도 금융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
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지급, 이체 지시 또는 기타 채무를 거래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는 방식
암호자산 crypto-asset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
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 또는 시스템의 한 개 이상의 요소가 실패하거나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외부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적, 기술적 및 인적 수단

용 어	해 설
오픈뱅킹 open banking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표준 방식(API)을 통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외환동시결제 payment versus payment	한 통화의 최종이체가 다른 통화 또는 복수 통화의 최종이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결제 메커니즘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정보시스템 또는 내부 처리절차의 결함, 사람의 실수, 관리 실패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교란이 FM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 질적 저하 또는 중단을 초래할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비록 장애에는 금융채무를 이행할 수 있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될 리스크
유틸리티토큰 utility token	분산원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토큰의 발행자에 의해서만 수용되는 암호자산
이연차액결제 deferred net settlement	일정기간 중 이루어진 자금이체에 대하여 참가기관 간 주고받은 금액을 모아서 상계 처리한 후 결제하는 메커니즘
일괄처리 straight through processing	지급결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표준화된 메시지에 의한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자금결제시스템 funds transfer system	참가자 간 자금의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중앙거래당사자 central counterparty	단일 또는 복수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금융 시장인프라(FMI)
중앙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계좌, 집중보관 서비스 및 기업행위, 상환업무 등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증권발행의 완전성(증권이 사고나 사기로 만들어지거나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현금)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사전에 정해진 일련의 다자간 규정에 따라 장부상 기재방식에 의해 증권의 이체 및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	대금 이체와 증권 인도가 함께 보장되도록 증권 인도와 대금 이체를 연계시키는 증권결제 메커니즘
증권형토큰 security token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뿐만 아니라 한우,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 계약 등 비정형적인 증권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참가기관 participants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정보저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FMI와 약정을 체결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default	해당 시스템의 규정 및 계약 등에 따라 자금 또는 증권의 이체를 완료하는 데 실패한 사건
청산 clearing	결제전 거래의 전송 및 확인 과정으로 거래의 차감 및 최종 결제포지션 확정을 포함. 때때로 결제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됨. 선물·옵션거래의 경우 청산은 수익과 손실의 일별 정산 및 필요담보의 일별 산출을 의미하기도 함
최종 결제 final settlement	금융시장인프라(FMI) 또는 참가자가 원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 또는 금융상품을 취소불가능하고 조건 없이 이전하거나 채무를 이행한 상태 또는 시점
토큰화예금 tokenized deposit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